

# [정규과정]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적권리

주제 : 나의 소중한 창작물, 저작권 등록으로 보호받자

#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해 그 창작자(저작자)가 갖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지적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양도 또는 상속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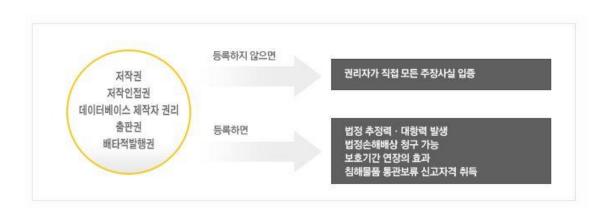
지적재산권: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권리. 전부 또는 일부 권리의 양도나 이전 가능. 넓은 의미에서는 저작인접권(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포괄한다.

####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즉, 등록, 납본, 기탁 등의 일체의 절차나 방식을 거쳐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저절로 생겨난다는 것! (저작권법 제10조 2항) 따라서 저작물이 창작만 되었다면 등록이라는 특별한 절차 없이도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 이유!

저작권 등록을 함으로써 **조금 더 쉽게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나아가 저작물의 공시에 따른 간접적인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점!





#### <u>저작권을 등록하면 생기는 힘 5가지!</u>

- 1. 추정력: 저작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 받는다. 만약 이 추정사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있다면, 이를 번복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 2. 대항력: 지적 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 설정 등 권리 변동을 등록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짐
- 3. 법정 손해배상 정구 가능 : 등록된 저작물을 침해 받은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음
- 4. 보호 기간의 연장: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실명을 등록하면 저작물의 보호 기간이 공표 후 7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됨
- 5. 침해 물품 통관 보류 신고 자격 취득 :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세관에 저작권 등록 사실 등을 신고, 침해 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정규과정]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적권리 : 나의 소중한 창작물, 저작권 등록으로 보호받자



'내 작품도 저작권 등록이 될까?' 저작권 등록을 하라는 말을 들으면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다.

과연,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크게 <mark>창작에 의해 발생한 권리와 설정 행위를 통해 발생한 권리</mark>로 나눌 수 있다.

#### 무엇을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크게 저작권(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갖는 권리), 저작인접권(실연ㆍ음반ㆍ방송 등 저작 인접물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가 갖는 권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제작자가 갖는 권리) 에 대한 사항 및 출판권(저작물의 출판에 대한 권리)과 배타적발행권(저작물의 배타적 발행에 대한 권리)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작에 의에 발생한 권리 설정영위를 통해 발생한 권리 저작권(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편집, 컴퓨터프로그램 등 저작물에 대한 권리) / 출판권(저작물) / 등록의 대상 저작인접권(실연, 음반 방송 등 배타적발행권(저작물) 저작인접물에 대한 권리)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

# (창작에 의해 발생한 권리>

저작권: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갖는 권리

1, 어문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등 언어를 매체로 하여 작성된 저작물
2. 음악저작물	악곡 등, 음에 의해여 표현되는 저작물
3. 연극저작물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에 있어 동작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
4. 미술저작물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형상 또는 색채에 의하여 미적으로 표현되는 저작물
5.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된 전체적인 디자인
6. 사진저작물	사진, 청사진 등 사진의 방법으로 표현한 저작물
7. 영상저작물	영화, 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되는 저작물. •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ㆍ배포ㆍ소지한 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8. 도형저작물	지도, 도표, 약도, 모형, 설계도 (건축 설계도 · 모형은 ⑤에 해당)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
9.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10. 편집저작물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그 밖의 자료 등 소재의 집합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포함)
11.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2차적저작물은 다시 위의 ①~⑩의 하나에 해당할 수 있음

※웹툰·웹소설 등 연재물(계속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은 하나의 저작물을 계속적으로 공표하면서 완성하는 저작물이므로 신청 시점까지 연재된 저작물을 모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1. 저작인접권: 실연, 음반, 방송 등 저작 인접물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가 갖는 권리

실연	저작물을 연기 · 무용 · 연주 · 가창 · 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음반	(가창ㆍ연주ㆍ자연의 소리 등)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 으로 CD와 같은 매체가 아니라 이에 수록된 콘텐츠 자체
방송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등

2.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데이터 베이스란 데이터의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하여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게 한 편집물.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해 인적,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설정 행위를 통해 발생한 권리〉

1. 출판권: 저작물의 출판에 대한 권리로 설정행위의 양 당사자는 출판권의 설정 및 양도, 처분제한,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대항력이 부여된다.

> 2. **배타적 발행권:** 그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 <u>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u>

https://www.cros.or.kr/main.cc